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국토종합계획(2011~2020) 및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등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와 구미시 인구증가, 제5산단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대내외적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를 위해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8조,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12일 실시한 「202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공청회 내용 중 공원·녹지계획이 일부 조정되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함

3. 주요내용

○ 공원·녹지계획(변경)

- 옥계묘지공원 1개소 폐지

· 위 치 : 구미시 옥계동 산7 일원

· 면 적 : 0.350km²

· 2012년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보건복지부)의 기본방향(신규 설치 및 확장은 제한)에 따라 공설묘지 확장계획이 없으며,

· 2011년 구미종합장사시설 건립 기본계획에 따라 화장장 신설이 예정으로 현 옥계묘지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됨을 고려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 대상(10만m² 이상 공원)인 옥계묘지공원 조정

<공원·녹지계획표>

구 분	2020년(기정)		2020년(변경) 당초 계획		2020년(변경) 일부 조정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개소	면적(km ²)
1인당 공원면적	48.49m ² /인		51.33m ² /인		50.75m²/인	
공원 합계	42	28.866	71	30.800	70	30.450
근린공원	39	26.67	57	27.703	57	27.703
체육공원	1	0.166	3	0.269	3	0.269
수변공원	—	—	8	0.533	8	0.533
문화공원	—	—	1	0.245	1	0.245
묘지공원	2	2.05	2	2.05	1	1.70

4.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검토의견

- 본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 구미시 옥계동 산7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내 350,000m²의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에 대하여, 금회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시 폐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 2012년 12월 10일 구미시 거의동 306번지 임병동 외 409명으로 부터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 지정해제에 대한 청원이 있어, 2012. 12. 18일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질의 토론하여 “구미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에 해당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필요성과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적극검토 대책마련요구 의견서를 채택, 구미시장에게 이송 처리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본 묘지공원은 1978. 9. 15일 결정고시 되어 2020년에 그 실효가 만료되며,
- 현재 묘지공원 구역 내 공설 묘지가 약 1,400여 묘지가 있으나, 관련부서 검토 의견 상 공설묘지 확장계획이 없다는 의견과 2011년 구미종합장사시설 건립기본계획에 따라 화장장 신설 등으로

현 옥계 묘지공원의 조성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금회 묘지공원을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 그러므로, 금번 2020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시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은, 구미시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적인 미집행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공원·녹지계획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